

工業所有權審判事例

登錄意匠無効

〈大法院 第1部 判決〉(1986. 11. 11)

事件番號：86 후 19

裁判長：윤 일 영

關與法官：이 명 회 · 최 재 호 · 황 선 당

1. 審判請求人(被上告人)：이우조(대구시 북구 칠성동 2가 144-29)
2. 被審判請求人(上告人)：경창산업(주) (대표：손 기 창)
3. 原 審 決：特許廳 1985. 12. 27字, 1985年 抗告審判(當) 第301號 審決
4. 主 文：上告를 棄却한다. 上告費用은 上告人의 부담으로 한다.
5. 理 由：上告理由를 判斷한다.

原審決理由에 의하면, 原審決은 被審判請求人의 이 사건 登錄意匠 자전거용 캘리퍼(Caliper) 브레이크 레버의 형상 및 모양을 그 出願이전인 1976년에 日本國에서 發行되고 같은해에 국내에서 반포된 日本자전거사업 진흥회에서 發行한 “JAPANS BI CYCLE GUIDE 1976”이라는 刊行物에 기재된 意匠 [품목 NO, 제51876호] 즉 第10, 11호증의 意匠과 1979. 10. 3. 發行된 日本國 意匠公報에 수록되어 있는 登錄番號 제 512980호 즉 第8호증의 意匠을 서로 대비하여 볼 때, 이 사건 登錄意匠의 반원형의 함입부와 반원형의 帶狀 크립이 원형의 상태로 체결토록 한 점은 第10, 11호증의 것과 同一하고, 또 일측이 45도 각도로 굴절경사지게 형성된 몸체에 손잡이를 결합하되 45도 각도로 굴절경사지게 형성된 손잡이 윗부분을 몸체와 합치되도록 하고 손잡이 아랫부분에 이를수록 점차 가느다랗게 형성하여 끝이 원형으로 형성된 손잡이를 결합한 점은 위 각 인용意匠들과 類似한 것으로 보여 짐으로 결국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볼 때 이 사건 登錄意匠과 위 인용意匠들과는 그 형

상과 모양이 類似하여 그 新規性이 없다는 취지로 判斷하고 있다.

原審決이 위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原審決의 위와같은 사실인정과 判斷은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裁證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사유가 없다. 논지는 理由없다. 따라서 上告를 棄却하고 上告訴訟費用은 敗訴者의 負擔으로 하기로하여 關與法官의 일치된 意見으로 主文과 같이 判決한다. <㉞>

◎ KIPA通信 發刊 案內 ◎

本會는 지난해 3월부터 매월 10일 特許界 뉴스誌 KIPA通信을 發刊하고 있습니다.

國內外 特許界 뉴스를 보다 신속하게 알려드리기 위해 發刊하는 KIPA通信의 많은 애독을 바랍니다. 會員社에는 무료 提供되고 있습니다.
(KIPA通信 編輯室)